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1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63625 지방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사회복지법인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5. 10. 13. 선고 2015구단605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6. 15.
판 결 선 고	2016. 6. 2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9. 1.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재산세 2,764,040원, 지방교육세 414,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16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김경환

판사 정승규